

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7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 간 기관 통합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,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의 통합을 전제로 개정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('22. 7. 29.시행)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부칙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등 (※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11. 30. ~ 12. 2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5797호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	부 칙
<p><u>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테크노파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

제4조의2(사업시행자의 사업 등)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 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
2.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
3.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
4.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성과평가 및 발굴·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
5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1.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
2.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
3.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
4. 산업·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
5. 산업·기술·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
6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

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업디자인진흥법

제5조(산업디자인의 육성·개발사업)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
2.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·지원

3.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

2.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

3.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

4.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
5.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

6.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부칙개정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혁신성장실 혁신성장정책관 신 규 원